2021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 학부모 연수















꿈과 사랑을 가꾸어 가는 행복한-

순창북중학교

http://www.sucbuk.ms.kr

│ 인성 인권 안전부

학생 생활규정 안내 사항

٦ /

학생 기본생활 지키기지도

- 08:40 까지 교실 등교(08:40 이후 지각생 지도)
- 등·하교 시 인도 및 횡단보도 이용, 교통사고 예방지도
- 교복 착용, 슬리퍼 상태로 등교 금지

Π

용의 및 복장 단정 지도

-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등교
- 학생용의 복장 규정(학생 생활규정 제80조, 제81조)

제80조[용의복장]

- ① 학교는 학교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②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③ 지정된 복장(춘추복, 하복, 동복)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④ 교복착용 시기는 날씨의 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 ⑤ 복장의 부착물 중 명찰은 탈부착 형태의 명찰 패용을 기본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면 교복에 고정식으로 패용할 수 있다.
- ⑥ 신발(실내화 포함)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 ⑦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⑧ 학생의 두발은 형태와 길이를 학생 개인의 취향과 개성에 따라 자유로이 하되 단정하게 관리한다. 헤어젤, 무스, 염색, 파마는 개인의 신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⑨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히 한다.
- 제81조[휴대폰 및 각종 전자기기 사용]휴대폰이나 전자기기 소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학급 조회시에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시에 돌려준다.(2021년2월 개정.-학생,학부모,교사협의회) (학생자치회, 학무모회, 교직원회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T

보호자의 학교폭력 징후 파알하기

■ 피해학생의 징후

- -몸이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잦아진다.
-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 -멍 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다쳤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 -운동화, 휴대폰, MP3,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며,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 -SNS, 교과서, 노트 등에 욕설, 폭언, 협박이나 "죽고 싶다" 등의 낙서가 있다.
-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방에 틀어 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다.
-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한다.
- -엄마나 동생 등 만만한 대상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 -필요이상의 용돈(참고서, 물품구입)을 계속 요구한다.

■ 가해학생의 징후

-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친구에게 받았다고 한다.
-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졌다.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부모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비밀이 많고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출(외박)이 잦아진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 -등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붕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 ※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은 학생과 흡연하는 학생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 체험활동이나 야영활동이 있다고 하면 꼭 학교(담임)에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 ※ 등·하교 길 교통(자동차, 자전거, 횡단보도이용 등)안전 지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Ш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준다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 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면담, 상담, 목격, 신고, 언론보도, 수사기관 등을 통해 사안 인지(접수) 하교 - 피·가해학생 조치 이행 교육지원청 조 - 생활기록부 기재 전담기구사안조 치 초기대응 oi - 조치 이행 결과 보고 사 (4)(5)(6) 행 - 사안접수(파악) - 소위원회 배정 회복조정 신청 - 소위원회 심의(의결) **(20)** - 접수대장기록 (1) - 심의위원장에게 보고 - 행정심판 청구(90일 이내) - 학교장 보고 - 보호자 통보 - 생활기록부 기재 - 결정통보(서면) 치 - 중때만 왔다고 → - 행정심판위원회 - 조치이행 요청 불 학교장 자체해결 - 교육**청시안보고** (2)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봌 심의 (2주 이내) 조치이행 유보 1주 연장 가능 조 회의 도중 당사자 모두의 - 회복조정 결과에 따라 치 동의 하에 회복조정이 유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신청된 경우 20 보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절차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 아닌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초기개입 및 사안조사

▼ 학교폭력 사안처리 초기개입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사안인지		즉시조치 및 사안 통보		사안조사 및 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2주이내 1주연장가능)
- 신고접수 대장기록 ①	•	- 학생 안전조치 및 <mark>학교장 긴급조치 ③</mark> - 학교장 보고 → 담임교사 통보 - 보호자 통보(유선, 내교요청 등)	•	- 회복조정 신청 20 - 사안조사 4056 - 사안보고 2	•	사안조사보고서 ⑥자체해결동의서 ⑦심의결과보고서 ⑧

- 즉시조치: 관련학생 안전조치, 학교장 긴급조치 가능
- ※ 학교장 긴급조치 : 피·가해학생 구분이 명확한 사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 학교장 보고 → 담임교사 통보 → 해당 학부모에게 신속(명확)하게 통보(유선, 내교요청)
- 사안조사: 관련학생 면담(조사), 보호자 의견 확보,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교육지원청 사안보고(팩스): 최초 보고되 사안은 반드시 최종 보고를 하여야 함

	최종보고				
최초보고 ②	조사 결과 오인신고 등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사안		
초기 사안조사 후 48시간 이내 보고	최종 사안조사 후 보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후 보고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이 완료된 후 보고		

- 보고 절차(FAX): 학교 → 관합교육지원청(063-653-1460) →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구성권자: 학교장
 - 구성원: 교감, 학교폭력책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 ※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하여야 함
 - 임기: 전담기구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교원은 근무기간, 학부모는 자녀의 재학기간 활용)
 - 선출 및 위촉방법

교원	학부모
학교장이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 학교장 위촉

※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

· 학부모 위원 수: 학교폭력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	3	4	권장		7	8	
			5	6			
학부모 위원	1	2	2	2	3	3	

- 전담기구 역할
 - · 학교폭력 사안접수(조사) 및 보호자 통보
 - · 교육(지원)청 사안보고 (48시간 이내), 사안조사 결과 학교장 보고
 -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회복조정) 및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 학교폭력 가해학생 4,5,6,8호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1,2,3,7호는 졸업과 동시 삭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 ※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 관리 →삭제 여부 심의 → 대상자 명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통보
- 전담기구 개최 (분기별 의무개최 없음)
 - · 전담기구 개최를 위한 정족수 및 학부모 참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 학부모 참석여부는 사안의 경중 및 특성에 따라 학교 자체 판단
 - 비밀유지: 전담기구 구성원으로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순창북중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임기:2020.3.1.-2022.2.28.)

총인원: 7명 (교원:4명, 학부모:3명)-전담경찰관1명(자문위원)

● 학교폭력 사안조사 ④⑤⑥

 사실확인
 →
 정보수집
 →
 요구사항 확인
 →
 회복조정 여부
 →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⑥

- 사안조사 중점 파악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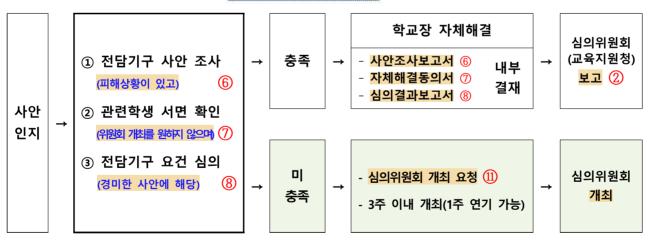
(학교폭력 행위의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 신체적 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구속), 성폭력 여부 - 경제적 폭력: 피해의 심각성, 반환, 손괴, 협박 여부 - 피해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인지 여부 - 정서적 폭력: 피해의 지속성, 협박, 강요, 성희롱 여부 -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화해)의 정도, 선도가능성 - 언어적 폭력: 명의도용, 폭력(음란)성, 유포 여부 - 집단폭력, 흉기사용, 폭력서클, 행위의 주도성 등

- · 사실확인: 피·가해·목격학생 대상 면담 실시 및 <mark>확인서(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확보</mark> ④⑤
- ** 설문조사 실시, 증거자료 수집(이메일, 채팅, 문자메시지 등), 진단서 및 소견서 등
- · 정보수집: 피·가해학생 교우관계, 학교생활, 사안경험 유무, 상담내역, 특이사항 등
- * 정황파악: 피·가해학생의 현재 상태 및 대응능력, 힘의 불균형 등을 파악

- 요구사항 확인: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요구 및 방향성 파악
- · 회복조정: 관계개선 및 회복을 위한 조정의사 확인 및 조정 지원 요청 (회복조정지원단 신청) 🔕
- · 보고서 작성: 면담일지 등을 토대로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⑥
- 피·가해학생 긴급조치
 - · 결정권자: 학교장
 - · 피해학생: 제1호 (심리상담), 제2호(일시보호), 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가해학생: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금지), 3호 (교내봉사), 제5호 (특별교육), 제6호(출석정지)
- ✓ 긴급조치 중, 출석정지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 가해학생 긴급조치는 추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함
 - 관할구역 내 다수의 학교가 관련되어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 ✓ 사안보고 : 학교별 사안보고(교육지원청으로 48시간 이내) ②
- ✓ 1차 사안조사 : 학교별 1차 사안조사 실시 ③④⑤⑥ 및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⑦⑧
- ✓ 관련학교 담당자 혐의 : 1차 사안조사 및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결과 공유 등

학교장 자체해결 부동의
- 학교별 사안조사 내용 및 쟁점사항 등 협의 - 학교별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일 조정 (00일까지 요청) - 학교별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공문 발송 111

●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의2



- * 전담기구는 사안인지(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를 완료하고 결정(필요시 1주 연장 가능)
- 기준: 관련학생 측 모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사안 기준)

-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진단서 회수 불가)
-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피해가 복구되거나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하고 피해학생 측이 인정)
-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전담기구 위원들이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 학교 처리 절차
 - · 학교장 자체해결 내부결재 (사안조사보고서 ⑥, 자체해결동의서 ⑦, 심의결과보고서 ⑧ 첨부)
 - * 내부결재 \rightarrow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bigcirc \rightarrow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서면, 유선, 문자 등)
 - 유의사항
 - · 학교장 긴급조치 시안을 학교장 지체해결로 종결하는 경우 학교장 직권으로 긴급조치 취소 (내부결제)
 - ·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
 - · 동일 시안에서 관련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학생이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어야 자체해결 가능
 - · 전담기구는 사건인지 후, 2주 이내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완료 및 결정 (필요시 1주 연장)
 - ㆍ 새로운 사실 확인 및 피해복구 약속을 불이행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학교가 다른 경우의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 ✓ 학교 간 사안조사 공유(협조) \rightarrow 전담기구 심의 \rightarrow 학교 모두 학교장 자체해결로 된 경우만 종결
- ✓ 어느 한 곳의 학교에서라도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불가

3 인권 교육

▮ 인권교육 강화

1. 목 적

- 가. 학생, 교원, 학부모 인권감수성 제고를 통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 나. 학생, 교원, 학부모 인권감수성 제고를 통한 상호 인권존중 문화 일상화

2. 방침

- 가.「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3781호에 명시된 인권교육 실시
- 나.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운영으로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 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권교육 내용으로 실시

3. 추진 내용

- 가.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운영
- 1) 인권교육센터 리모델링 (구 전주 만성초) 2014. 9. 1. 개소 운영
- 2) 학생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조사.구제 및 상담 인력 배치 운영
- 나. 각 학교「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준한 학생인권교육 실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직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 ① 보호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에 대하여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하며,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다. 학생인권교육 지원

- 1)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권교육 내용으로 실시
- 2) 인권교육 강사단 풀 구성 약 50명(장애, 노동, 인권일반, 인권법 등)
- 3) 인권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인권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4종
 - 인권교육과 홍보를 위한 일러스트 삽화 지원
- 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제작 배포(인권교육용)
 -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5,000부 배포

- 5) 장애인권, 노동인권교육 지원체제 구축운영
 - 특수교육담당, 특성화고 담당 부서 강사풀 구성 및 지원
- 라. 교직원 인권교육지원
- 1) 전북교육연수원 각 종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시 인권교육 강좌 개설운영
- 2) 전북교육연수원 행정공무원 연수 인권교육 강좌 개설 운영
- 3) 희망하는 학교에 찾아가는 교원인권교육 지원
-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준한 인권교육용 자료 홍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9조(홍보) 교육감은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기대 효과

- 가. 인권교육 일상화를 위한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 나.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단위학교 인권교육활성화 가능
- 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학교현장 안착화 기반 마련

II

인권우호적인 생활교육지도

1. 목 적

- 가. 헌법, 국제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3781호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보장
- 나.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 다. 학생 참여와 교육적 합의를 중시하는 학교 분위기 정착
- 라. 시대적 변화와 학생발달단계를 고려한 생활교육지도
- 마. 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체벌 문화 불식
- 바. 학생과 교원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2. 방침

- 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전라북도 조례 제3781호)에 준한 생활교육지도
- 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혁신
- 다. 학교 내 문제는 학생 자치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적으로 해결
- 라. 학생의 용모에 대해서는 교육상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지도
- 마. 학생들이 학교규범을 스스로 준수하고,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바. 학교 실정에 맞는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실천 방안 수립

3. 추진 내용

- 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생활규정의 정비 및 제.개정
- 1) 학생, 교원, 학부모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학교생활규정 개정
- 2)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공감대 확대 및 민주적 절차 이행 철저
-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학생, 학부모, 교원)
-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 및 학생 대표 참여, 의견 진술 기회 보장
- 3) 제.개정된 학교생활규정 자율 준수 풍토 조성
- 4) 민주적인 학생회 회칙 개정

- 5) 민주적인 학생 선도 규정 제정
- 징계 기구 : 징계위원 구성 시 외부 인사 참여 가능
- 진술 기회 부여 : 당사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 부여, 사전 '징계 사유 통지' 명문화
- 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 권 :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재심 및 이의신청 절차 확보
- ㅇ 징계 : 징계 정도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전체 협의과정을 통해 결정
- 나. 학생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 존중의 생활교육지도 강화
- 1) 학생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담과 생활지도
- 2) 전 교사 참여의 학생 지도 체제 구축
- 3) 가정.학교.사회의 연계로 학생들의 바른 생활태도 함양
- 다. 인권 존중의 학생지도 방법 정착
- 1) 학생 지도 등 모든 교육활동에서의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 사용
- 2) 학생들의 인격 보호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 연수 실시
- 3) 학생과의 대화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 라. 자율적인 두발 지도 대책 수립
- 1) 학생의 두발은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의한 지도
- 2) 강제 이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함
- 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 준수 촉구
- 마. 학교 실정에 맞는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 전개
- 1) 체벌 관련 학교생활규정의 정비 및 제ㆍ개정
 - 체벌 규정 허용 학교 삭제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와 합리적 절차를 통한 개정
 - 관련 법령,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적극 반영
- 컨설팅 장학지도 시 체벌 규정 점검
- 2) 체벌 대체 교육방법 강구
 - ㅇ 담임교사, 상담교사 중심 학생상담 일상화로 학생과 관계회복 중심지도 방안 사례 발굴 보급
 - 체벌 대체 교육방법 발굴 및 보급
- 3) 체벌 추방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학교별 교원 대상 연수 실시(학기별 2회)
 -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실시
- 체벌 금지 안내 및 학생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 체벌 금지 법령(판례) 및 위법자 처벌 사례 적극 홍보
- 4)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홍보
- 학부모회의 및 가정 통신문을 통한 홍보
- 체벌 관련 규정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 5) 학생의 인권 자율 자책임의식 제고
- 학생들의 학교생활규정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개정 및 자율 준수 풍토 조성
- 학교생활규정 준수를 위한 다짐 행사실시
- 6) 학생 인격 존중 및 생활화
- 교육활동 시 경어 사용
- 단체 기합 등 간접체벌과 학생 비하발언 지양
- 바.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는 즐거운 학교.학급 만들기
 - 1) 학급 내규를 통한 자치활동 일상화 학급단위 현장 체험활동
 - 2) 선도 대상 학생들에게 처벌 중심보다 봉사활동을 하도록 권장

- 3) 학생회 중심 교내자치법정 운영
- 4)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 보장과 침해 사례 구제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4. 기대 효과

- 가. 비교육적 요소 척결을 통한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
- 나. 적극적인 학생 의견 수렴、반영으로 생활지도의 민주화
- 다. 학교생활규정 준수를 통한 학생들의 자율성과 준법정신 함양
- 라. 체벌 대체 효과로 인권이 존중되는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구현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1. 목 적

- 가.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로 학생중심 학교문화
- 나. 토론문화 형성을 통한 민주적 자치역량 배양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
- 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한 주인의식 고취
- 라. 학교 및 학급 단위의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 마.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확립되는 분위기 조성과 학교문화 정착

2. 방 침

- 가.「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자치활동 보장
- 나. 학교 단위별 학생자치회 지원 강화
- 다. 학교별 학생자치회 활동 시간 및 공간 확보
- 라. 학생회 중심의 학생동아리 활동 활성화

3. 추진 내용

- 가. 학생 자치활동의 자율권 보장 및 지원 체제 확립
- 1) 학생자치회 주관의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권 부여 권장(학교 회계 약 1%)
- 2) 학생자치회실, 동아리방 등 자치활동 공간 확보 지원 (중,고 40개교)
- 3) 학생회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의견 개진 권한 부여 권장
- 4) 학생자치회 정기총회 시간 확보 월 1회 이상
- 5) 학교장과의 정기 대화 시간 운영
- 6) 학생이 참여하는 단위학교의 학칙 및 학교생활 규정 정비와 제 '개정
- 나. 소통과 존중이 있는 학생자치회 문화 조성
- 1) 초.중.고 학교의 학급 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 2) 학급 담임 교사의 '연간 학급 경영 계획' 수립
- 3) 학급 구성원을 주체로 학급 단위의 토의 주제 개발
- 4) 모둠 중심의 학급자치회 구성활동
- 5) 학교 도움센터를 통한 학생 상담과 소통의 문화 조성
- 6) 학생이 주관하는 조.종례 실시
- 7) 학급자치회 시범 학급 지정 운영 권장
- 8) 테마가 있는 학급 운영' 권장
- 다. 학생 동아리 활동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
- 1) 총학생회에 학생 자율 동아리반 편성 운영
- 2) 학생자치회 자체의 동아리 운영 내규 제정
- 3) 학교 실정과 여건에 알맞게 활용 가능한 동아리방 확보 활동
- 4) 특별활동 부서와 동아리 부서의 일원화 추진 운영 권장
- 5) 동아리 활동 연간 계획 수립 운영
- 6) 학년 말 활동 보고서 제출과 평가회를 통한 자치활동의 내실화 도모

- 7)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학생 자치회 및 동아리 중심의 학교 축제 개최
- 8) 지역 인근 학교 연합으로 다양한 행사 개최 권장

4. 평가.환류

- 가. 제반 행사 후 교사와 학생이 참여한 평가회를 통한 반성 및 대안 강구
- 나. 학생자치회 활동 우수 학교와 우수학생 발굴 표창
- 다. 우수 동아리 발굴 육성과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5. 기대 효과

- 가. 상호존중과 합리적 의사 결정 방법의 체득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함양
- 나.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즐거운 학교생활의 기회 부여
- 다. 선.후배 간 연대감 형성과 애교심 고취 및 학교 전통 수립
- 라. 적극적인 학생 중심의 자치활동으로 리더십과 공동체의식 함양
- 마. 아름다운 학교 규칙과 약속이 움직이는 학교로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

4 교권 보호 교육

1.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가. 「형법」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 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2. 교원지위법(제18조, 제21조) 개정 주요 내용

영역	개정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강화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 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예-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교원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
보호조치 비용	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의한 고발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함

3. 함께 노력해주세요!!

선생님은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u>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u>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보건 교육

🤏 성범죄자 알림 e(http://www.sexoffender.go.kr/) 를 통해 우리 동네의 성범죄 확인 가능합니다.

성을 금기시하는 우리 문화상 자녀와 성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녀들은 TV와 인터넷, 또래로부터 성과 관련된 이야기, 이미지 혹은 영상 등을 접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관심을 보일 때 부모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함께 자기보호 방법을 알려준다면 자녀는 성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로 하는 것, 보여주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 입니다. 즉 성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괄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접촉을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가벼운 추행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고, 당하는 사람의 심정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봅니다. <u>성폭력</u>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라도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만지는 행동, 상대방의 몸에 대해 놀리는 등 수치심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영상, 사진, 그림 등을 보여주는 것 모두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는 어떤 아이를 두려워하는가?

1 사랑받는 가정, 안전한 가정환경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 등 가족과의 친밀도가 높고, 가족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자가 아이에게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2 '질문이 많은' 부모

부모가 아이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아이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이 많은 부모는 아이의 일상생활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으므로 성폭력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3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많이 받은 아이

신체적으로 애정 표현을 자주 받은 아이는 애정에 굶주려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접촉을 많이 받은 아이는 가해자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오는 '가장된 애정'이 자신의 부모 등에게 받은 애정과 다름을 직감적으로 구분하게 되고 이러한 애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4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아이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아이는 범죄 상대로 위험부담이 매우 큽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이러한 아이들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아이를 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이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성폭력 예방의 핵심은 아동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고, 부모가 아동의 입장에서 얼마나 잘 들어주고 반응을 하는 가 입니다.

★ 성폭력이 발생 하는 그루밍(길들이기) 과정 알기



◆ 성 인권 행동지침



상대방의 모습을 함부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인터넷 등에 올리지 않기



다른 사람의 외모, 이름을 비하 하거나 놀리지 않기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지 않기



피해 사실이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기

◆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Safe! 안전하게 친구들과 생활하려면....



- 평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요.
- •스킨십을 하고 싶다면 먼저 허락을 구해야 해요.
- •성적인 농담이나 놀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안돼요.
- •여러 사람이 "뽀뽀해!" 등과 같은 성적인 행동을 시키거나 강요하면 안돼요.
- •신체 노출이나 성적인 행동을 사진 찍어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안돼요.
- 생각 없이 성희롱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Help! 피해자가 주변에 있다면....

- •이런 말은 친구를 더 힘들게 해요! : 덮어두어라, 나라면 안 그랬을텐데, 네 잘못도 있어.
-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절대로 소문내면 안돼요.
- •친구 말을 믿어주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꼭 권하세요.



Say! 피해를 당했다면....

-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도움을 반드시 요청해요.
- 학교 : 교무실, 상담실, 보건실 상담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전화 1388
- 상담·신고기관 : 학교폭력·성폭력 신고 117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899-3075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 가정폭력의 특성

-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개입, 치료, 예방의 시기를 놓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 •폭력의 피해자들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과 스스로의 자책감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뭅 니다.
-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을 남의 가정 일에 끼어드는 일로 여겨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은 은폐된 채로 피해자들은 반복 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희생되게 됩니다.

◆ 아동학대란?

학대의심징후

발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아동학대 신고

→

→

현장조사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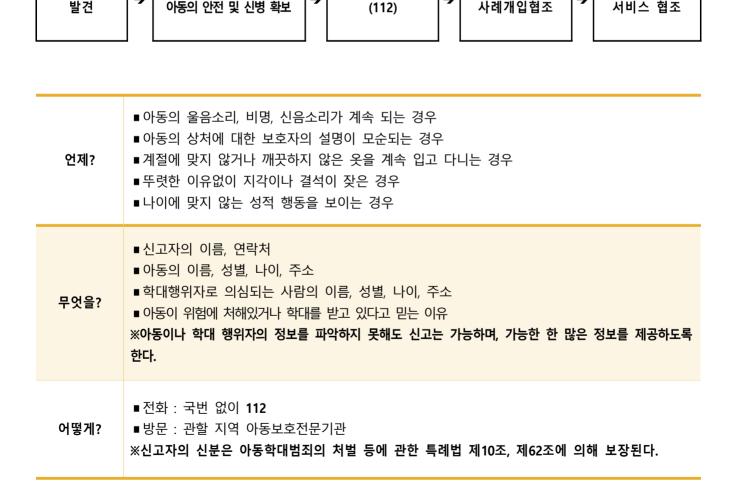
사후지원 및

→

◆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방법

→

응급상황 시,



IV

가정에서의 흡연예방 교육

사랑하는 자녀들이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자녀일수록 흡연율이 높으므로 부모 자신이 담배를 피우면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그만큼 단축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나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유혹 및 압력에 이겨내도록 부모님의 분명하고 단호한 신념을 보여주고, 그 신념이 자녀와 일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 흡연의 영향

- 1)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정신적, 신체적 미성숙 상황에서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성과 건강 위해의 심각성이 커집니다.
- 2) 청소년기 흡연자의 대다수가 성인기 흡연자로 이어지면서, 청소년 흡연자는 잠재적으로 성인 흡연자로서 니코틴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입니다.
- 3) 다른 약물 남용, 음주, 본드 흡입과 반사회적 행위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2.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으므로 부모 자신이 담배를 피우면 사랑하는 자녀의 생 명을 그만큼 단축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 ◆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 ◆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 ◆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습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흡연 시 발생 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 먼지 등의 표면에 부착 한 뒤 몇 시간~ 몇 달 장기간 재 배출(3차 간접흡연)됩니다.
- ◆가족과 함께 외식 시에는 금연 지정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지 잘 살펴주시고 금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하되 무엇보다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와의 의미 있는 대화시간을 가지세요! 청소년들에게는 그 어떤 금연운동보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3. 간접흡연은 정말 위험한가?

담배연기의 독성물질은 흡연자가 흡입하는 '주류연'보다 담배가 직접 타면서 발생하는 '부류연'에 더욱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차 흡연) 또한 담배연기를 직접 흡입하지 않아도 흡연을 한 흡연자 주변에 있는 비흡연자에게서도 니코틴 대사산물인 '코티닌'이 검출됩니다.(3차 흡연) 또한 간접흡연 역시 폐암, 심혈관계 질환, 자궁경부암, 저체중아 출산 등의 원인이 되며, 아동의 지능, 집중력과 학습능력 저하 및 행동장애(ADHD)를 일으키거나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V

학부모와 함께 하는 양성평등교육

F

성차별이란?

생각이나 행동에서 여자와 남자를 공평하지 않게 대우, 성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 【예】① 남자는 씩씩해야 하고 여자는 다소곳해야 한다.

- ② 우리 학급에서 회장은 남자, 부회장은 여자가 해야 한다.
- ③ 남자는 돈을 벌기 때문에 집안일을 안 해도 된다.
- ④ 남자는 슬퍼도 울면 안 된다.

2 성차이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생식기를 가지며, 성장하면서 신체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자는 XX,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는 것 【예】① 여자는 아기를 낳는다.

- ② 여자와 남자는 신체 구조가 다르고, 자라면서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 ③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보다 근육양이 많아서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

3 성고정관념

남자와 여자의 능력, 특성,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예】남자는 중요하고, 씩씩하고, 용기 있고, 활기찬 일을 하고 여자는 얌전하고, 정숙하고, 섬세한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

일상에서 자녀에게 하는 대표적인 성차별 발언들 (양성평등진흥원제공)

아들에게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공부를 잘못하면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릴래? 사내자식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울어? 사내자식이 통이 커야지 사내다워야 하는 거야

딸에게

공주같이 예쁜 딸 여자니까 옷차림이 단정해야지 여자니까 예쁘게 걷고, 예쁘게 말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집을 잘 가지 설거지는 여동생한테 시켜라



<출처>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

양성평등 :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차별 없이 존중하는 태도**

알성평등 함께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출처>여가부

VI

가정에서의 감염병 예방 교육

1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염병

병 명	병원체	감염경로	전염 가능 기간 (등교중지 기간 참고)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두분비물, 객담 → 비말감염	해열 후 2일 경과까지
수 두	수두바이러스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모든 발진이 딱지가 앉을 때까지(약 7일)
유 행 성 이하선염	멈프스바이러스	타액 → 비말감염	증상발현 후 5일까지 (이하선종창 소실일 까지)
풍 진	풍진바이러스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발진 소실일 까지)
유 행 성 각결막염			주요 증상 소실 후 2일 경과까지
성홍열	성홍열 A군B군용혈성 인두분비물 연쇄상구균 → 비말감염		치료 시작하고 24시간까지
홍 역	홍역바이러스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해열 후 3일 경과까지)

2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학생에게 발생하는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이 됩니다.

- 법정 감염병 환자, 법정 감염병 의사환자, 법정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 가.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연락한 후 병원에 갑니다.
- 나.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이 나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하시고 격리 치료를 합니다.
- 다. 치료, 완치 후 병원에서 확인 받은 의사의 진료 확인서(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국민행동수칙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국민행동수칙

① 올바른 손씻기 ② 기침예절 지키기 ③ 음식 익혀먹기

④ 예방접종 받기 ⑤ 해외여행력 알리기

4 올바른 손씻기 방법





가정에서의 미세먼지 대응 교육

1 기세먼지(PM₁₀)

(기준 : μg/m³)

	예보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	쁨
	단계	0~30	31 ~ 80	81 ~ 150	151 이	상
다	응단계	평상시 (0~50)	WHO 권고 기준 초과 (51~)	고농도 예보 (81 이상) 당일"나쁨"이상 (81 이상)	주의보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경보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2 초미세먼지(PM_{2.5})

예보 좋	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단계 0~	15 16~50	51 ~ 100	101 이상

대응단계	평상시	WHO 권고 기준	고농도 예보 (51 이상)	주의보 (90 이상	경보 (180 이상
11664	(0~25)	초과 (26~)	당일"나쁨"이상 (51 이상)	(90 이성 2시간 이상 지속)	(180 이성 2시간 이상 지속)

3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예보	riio 다네	기준(μg/m³)	데 O 다.게비 포커 나침
단계	대응 단계	PM10	PM2.5	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조승이미	평상시	0-50	0-25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학생, 학부모 지도·홍보) - 학생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 등 비치·점검 및 미세먼지 민감군 등 관리 대책 마련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 실시간 확인 (에어코리아,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보통	WHO 권고기준 초과	51-80	26-50	-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 실시간 확인하여 WHO 권고기준 초과일 경우 ▶ 학생 마스크 착용 지도(경각심 고취 및 마스크 생활화 지도)
나	익일 "니쁨"이상 (고농도예보)	81 이상	51 이상	-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 확인(매일 17시 다음날 예보상황 확인) 하여 익일 "나쁨" 이상일 경우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문자, 가정통신문 등 발송 (마스크 착용 후 등교, 행동요령 안내 등)
譜	당일 "나쁨" 이상	81 이상	51 이상	-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 실시간 확인하여 당일 "나쁨" 이상일 경우 ▶ 실외수업 자제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 ▶ 외부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 안내 ▶ 실내공기질 및 위생관리(물청소, 창문 닫기, 손 씻기, 온몸 먼지털기 등) ▶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행동요령) 실시
매우	주의보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주의보" 발령 시 → 학 교 :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 바깥놀이,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 → 외부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 및 보안경 등 착용 → 실내공기질 및 위생관리(물청소, 창문 닫기, 손 씻기, 온몸 먼지털기 등) →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행동요령) 실시 →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매우나쁨	경보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 "경보" 발령 시 ▶ 학 교 :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권고,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 외부활동 시 마스크 및 보안경 등 착용 ▶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행동요령) 실시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단축수업이나 휴업조치 시 연락체계 유지 ▶ 학교 소독·청결 및 학생 위생관리 강화

VIII

학부모와 함께하는 코로나19 대응 교육

◆ 코로나19란?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입니다.

◆ 전파경로

•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전파이며 비말 이외, 표면접촉, 공기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 작복기

• 1~14일(평균 5~7일)

◆ 증상

• 임상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하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후각과 미각 소실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치료

• 환자의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수액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가 진행되며 2020년 12월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 일반 국민 예방 수칙

-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특히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하기

◆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 자제,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
- 대형 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할 보건소(순창군보건의료원), 1339, 지역번호+120으로 먼저 상담하기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 이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 의료인과 방역 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안내

학년: 반: 번호: 이름:

안녕하세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현재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단계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체온측정결과 위 학생은 코로나19 의심증상 (37.5도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등)으로 등교중지 및 선별진료 소 검사·의뢰를 권고하오니, 의사 소견에 따라 등교 가능 시 학교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내용을 숙지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 등교 중지 기간 동안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

- 매일 자녀의 **자가진단 설문에 참여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u>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시각·후각 마비 등의 증상 중 한 가지라도</u>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습니다.
- 선별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를 관찰합니다.
- 열이 내리고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합니다.
- <u>하루 1회 담임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전화할 예정입니다.</u> 학생 유선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세요. (핸드폰 충전) 학생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학부모께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의 심리적 상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시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담임선생님을 통해 <u>상담교사, Wee class, Wee center 상담교사와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u> 신청해주시면 담임 선생님께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 완쾌 후 등교 시 ①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②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처방전 또는 가정요양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인정 됩니다.

2021. 3.

순 창 북 중 학 교 장

··· 절 취 선 ···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

	코로나19 관련 가정 요양 확인서
학년 반	학생 이름 성별 □ 남 □ 여
등교중지기간	2021 ~
	위 학생은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71.71.004	□시각·후각 마비 □기타) 으로 자율격리 권고를 받아 가정에서 격리 후
가정 요양	증상이 소실되어 학교에 정상 등교합니다.
보호자 확인	2021
	보호자 성명 (인)

순창북중학교장 귀하

∏ 연구운영부

시정표 및 주간운영 계획

일과 시정표

구분		시 간						
담임시간	08:40	08 : 50	10분					
1교시	08 : 50	09 : 35	45분					
2교시	09:45	10:30	45분					
3교시	10 : 40	11 : 25	45분					
4교시	11 : 35	12 : 20	45분					
점심시간	12 : 20	13 : 20	60분					
5교시	13 : 20	14:05	45분					
6교시	14 : 15	15 : 00	45분					
7교시	15 : 10	15 : 55	45분					
8교시	16 : 05	16 : 50	45분					
청소/종례	16 : 50	17 : 10	20분					

주간 운영계획

교시	월	화	수	목	금	토요방과후
아침	담임시간	담임시간	담임시간	담임시간	담임시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신나는 주말
5교시						체육학교
6교시		1,3학년 정상수업 방과후 악기(2학년)	방과후 악기(1학년) 2학년 스포츠 활동 방과후 독서(3학년)		창·체	(탁구,축구)
7교시		진로탐색 (1학년) 방과후 악기(2학년) 3학년 창·체	방과후코딩·스피치(1년) 2학년 스포츠 활동 방과후 악기(3년)	방과후 독서(1학년) 방과후코딩·원어민회 화·교과(2,3학년)	창·체	
8교시				오케스트라(2,3학년)		

2 「수업공개의 날」 운영 계획

순	항 목	운영 방안	비고
1	수업공개 횟수	전 교사 연1회	
2	수업공개 대상	전 교사	
3	수업참관 대상	교장, 교감, 학부모, 본교 교사	
4	수업공개 방법	가정통신문, SMS 문자메세지,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5월
5	수업공개 시정	08:30~09:00 학부모 등록 09:00~11:35 공개수업 참관 11:45~12:10 학부모 간담회 연수	
6	수업공개 일시	1학기 6월 1일(화)	

방과 후 자기 주도적 학습(자율) 운영

- 방과 후 자기 주도적 학습(자율학습) 기간 : 4월 ~ 11월 말
- 운영시간

¬	11 7L	운영		비	고	
교 시	시 간	시간	월	화	수	목
1 교 시	17:10 ~ 18:00	50분		자기 주	도적 학습	
석 식	18:00 ~ 18:50	50분		석	식	
2 교 시	18:50 ~ 19:35	45분	국어,영	어,수학,사호	리,과학,역사,	정보 수업
3 교 시	19:45 ~ 20:30	45분	국어,영	어,수학,사호	기,과학,역사,	정보 수업

4 자유학기제 운영 1학년 교육과정

■ 2021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1학년 교육과정 모형 (오전-교과활동, 오후-자유학기활동)

1학기 (102시간)

2학기 (119시간)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기	본 교과(27시	간), 자유학기	활동수업(6시	간)					
2		성취 기준 기	반 수업							
3	○ 수업방법 - 무제해격	이사소통 토로	·, 실습, 체험 등	<u> </u>						
4			심의 수업과		형 가					
5			예술활동							
6	체육활동				주제선택					
7	체육활동	체육활동 진로탐색 동아리								
8					자율・봉사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급
1			<u>'</u> '), 자유학기	활동수업(6시	간)
2		: 성취 기준 기	기반 수업		
3	○ 수업방법 - 문제해결	의사소통, 토·	론, 실습, 체험	등	
4			중심의 수업회		평가
5			예술활동		주제선택
6	체육활동				주제선택
7	체육활동	진로탐색			동아리
8					자율 • 봉사

5 평가 계획

1 정기고사(내신 성적 반영)

-	고사명	방법		실시일	비고
1학기	1차 고사	지필평가	4.27.(화)~4.28.(수)	
1471	2차 고사	지필평가	6.30.	(수)~7.2.(금)	
2학기	1차 고사	지필평가	10.7.	(목)~10.8.(금)	
2471	2차 고사	지필평가	12.2.(목)~12.6.(월)	
ተ	·행평가	보고서 수업활동 등 된	명가 1학기	당 1회 반영	반영비율 40~100%
	학력진단평가		실	시일	비고
	기초 학력진단평	가	3.1!	5.(수)	1학년
영어듣기능력 평가 중1			중2	중3	송출 시간
1학기	1회(4월)	4.6.(화)	4.08.(목)	4.09.(금)	11.00 11.20
ったしつし	그렇다 그렇게 되었다.		0.00 (ሌ)	0.00 (日)	11:00~11:20

9.08.(수)

9.09.(목)

2 교과 영역별 배점

2회(9월)

9.07.(화)

🧼 국어과

2학기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형	병 평 가	
반영비율		60	%		4	10%
	1차고	사(30%)	2차고	사(30%)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말하기ㆍ듣기	<u>쓰</u> 기
	선택성	단답 서술	선택병	단답 서술		
영역만점	70점	10점 20점	70점	10점 20점	20점	20점
8 취단 급	70'=	30점	70'=	30점	20'8	20'=
반영비율	21%	9%	21% 9%		20%	20%
기본점수	C)점	C)점	8점	8점

🧼 영어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40%	
	1차고	사(30%)	2차고	.사(30%)			
평가영역	선택형	서태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말하기	쓰기
	건국8	단답 서	술	단답 서술			
영역만점	70점	10점 20	점 70점	10점 20점	20점	10점	10점
8위단점	70'=	30점	70'8	30점	20'=	10'	10.9
반영비율	21%	9%	21%	9%	20%	10%	10%
기본점수	C	0점 0점			8점	4점	4점

🍑 수학과

평가방법			지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6			40	%	
	1ブ	다고사(30 ⁹	%)	2차	·고사(30	%)			
평가영역	선택형	서딥	납형	선택형	서딥	납형	배움평가	역량평가	
	278	단답	서술	건국당	단답	서술			
영역만점	70점	10점	20점	70점	10점	20점	20점	20점	
	_	30	점	_	30점		_	_	
반영비율	21%	99	%	21%	9%		20%	20%	
기본점수		0점			0점		8점	8점	

🧼 사회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형	행 평 가	
반영비율		60	%		4	40%
	1차고	사(30%)	2차고	사(30%)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배움평가	역량평가
	건국8	단답 서술	연극성	단답 서술		
영역만점	70점	10점 20점	70점	10점 20점	20점	20점
8위단점	70'=	30점	70'=	30점	20'=	20'6
반영비율	21%	9%	21% 9%		20%	20%
기본점수	()점	C)점	8점	8점

🧼 역사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1%	40%			
	1차고	사(30%)	2차고사(30%))	ull O 귬 기	역량평가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	급형		서답형		배움평가	(비주얼씽킹, 주제탐구,
		단답	서술	선택형	단답	서술	(서술,구술,논술)	과제연구)
영역만점	70점	10점	20점	70점	10점	20점	20점	20점
0760	70 🗖	30)점	700	30점		20 🗖	20 🗖
반영비율	21%	9%		21%	9	9% 20%		20%
기본점수	C)점		0점			8점	8점

🧼 과학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60	%		40%				
	1차고	사(30%)	2차고	사(30%)		배움 기록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	급형	선택형	서답형			탐구평가	융합평가	
	L 4 8	단답	서술	선택성	단답	서술	평가			
영역만점	70점	10점	20점	70점	10점	20점	20점	10점	10점	
8 위한 급	70'=	30)점	70'=	30점		20'=	10.8	10.9	
반영비율	21%	9	%	21%	99	%	20%	10%	10%	
기본점수	C	0점			0점			4점	4점	

💚 도덕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0%		70)%	
	1차고사	2차고	사(30%)	가치	가치	
평가영역		선택형	서답형	이해	기지 실천	
		선택병	단답 서술	ाणा	20	
영역만점	미실시	70점	20점 10점	35점	35점	
8 위한 급	미크시	70'=	30점	23.0	23.0	
반영비율		21%	9%	35%	35%	
기본점수		()점	14점	14점	

🧓 기술·가정과

평가방법	지 필	!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3	0%		70%				
평가영역	1차고사	2차고사(30%)		프로젝트1	프로젝트2	수업포토		
0/107		선택형	서답형	===1=1	== ===	폴리오		
영역만점	미실시	70점	30점	20점	20점	30점		
반영비율	미ㄹ시	21% 9%		20%	20%	30%		
기본점수		0;	점	8점	8점	12점		

🧼 한문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미실시	한자의 3요소 전통문화 이해	성어의 의미 이해 선인들의 지혜와 사 상	이해 선인들의 지 혜와 사상	한문 산문과 한 시의 이해와 감 상							
평가단원	(1학년 자유학년제)	한문의 첫걸음 한자와 어휘	이야기와 성어 지혜가 담긴 말	우리의 전통과 문 화짧은 글, 깊은 뜻	옛사람들의 노래 선인들의 향기							
횟수		1차	2차	3차	4차							

🦤 정보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пы	포트폴리오 및 미래사회탐색	역량평가	정보구조화 및 프로그래밍							
영역만점	미실시	50점	25점	25점							
반영비율		50%	25%	25%							
기본점수		20점	10점	10점							

🧼 음악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가창	감상	생활화						
영역만점	미실시	30점	30점	20점	20점					
반영비율		30%	30%	20%	20%					
기본점수		12점	8점	8점						

🧼 미술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표현1 표현2								
영역만점	미실시	50점	30점	20점						
반영비율		50%	30%	20%						
기본점수		20점	12점	8점						

🧼 체육과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100%							
평가영역		건강체력	운동기능						
영역만점	미실시	20점	80점						
반영비율		20%	80%						
기본점수		8점	32점						

🧓 중국어과

Sec. 0 1 1-1												
평가방법	지 필 평 가		수 행 평 가									
반영비율		1	00%(1학기)		100%(2학기)							
평가영역	미실시 (1학년자유학 년제)	중국어 특징 이해 성조, 성모, 운모 교실 중국어	만날 때 인사 헤어질 때 인사 감사와 사과	한국과 중국 자기소개 이름 묻기	월일에 관한 표현	시와 분 시간 묻고 답하기	물건사기 표현 중국화폐 단위					
평가단원	다시()	1. 발음	2. 인사	3. 국적과 이름 묻기	4. 날짜 묻기	5. 시간 묻기	6. 중국의 화폐					
횟수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교무기획부

2021학년도 전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구분				1호	t년		2호	t년	3학년		
	구분	!	1학기 (기본)	1학기 (자유)	2학기 (기본)	2학기 (자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국어	68	68	68	51	68	68	68	68	
	사	사회	51	51	51 34		0	0	34	34	
	회 <i>/</i> 도	역사	0	0	0	0	51	51	34	34	
	<u>ㅜ</u> 덕	도덕	0	0	0	0	34	34	34	34	
		수학	68	51	68	51	68	68	68	68	
	과	과학	51	51	51	51	51	51	51	51	
	학/ 기 숙.	기술·가정	51	34	51	51	34	34	51	51	
교	술. 가 정	정보	0	0	0	0	17	17	0	0	
과 (군)		체육	51	34	51	51	34	34	51	51	
(世)	예	음악	17	17	17	17	34	34	17	17	
	술	미술	17	17	17	17	17	17	34	34	
		영어	68	51	68	51	68	68	51	51	
		한문	34	34	34	34	0	0	0	0	
	선	생활외국어		31	3.		0	0	0	0	
	_ 택	환경	0	0	0	0	0	0	0	0	
		보건	0	0	0	0	17	17	0	0	
		진로와직업	34	17	34	17	0	0	0	0	
		사시수 합계	510	425	510	425	493	493	493	493	
		자율활동	12	12	12	12	7	7	12	12	
창의적		아리활동	12	0	12	0	17	17	17	17	
체험		봉사활동	5	5	5	5	5	5	5	5	
활동		진로활동	5	0	5	0	5	5	17	17	
	,	적 체험활동 니수 합계	34	17	34	17	34	34	51	51	
학교		창체활용(~68)	17	17	17	0	17	17	0	0	
스포츠		창체순증	0	0	0	0	0	0	0	0	
클럽		교과감축	0	0	0	0	17	17	17	17	
활동		고스포츠클럽 니수 합계	17	17	17	0	34	34	17	17	
총	수업 시	l간 수	561	561	561	561	561	561	561	561	
	진	로탐색활동	0	17	0	17	0	0	0	0	
자유	주	제선택활동	0	17	0	34	0	0	0	0	
학년 활동	예	술체육활동	0	51	0	51	0	0	0	0	
ョ 6 (교과/ 창체)	동	등아리활동	0	17	0	17	0	0	0	0	
o ^II)	자	유학년 시수 합계	-	102	-	119	-	-	-	-	

2021학년도 학사일정

1학기

							Sch	ool Calender							
월	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수	
	1		1	3.1절	2	입학식	3		4		5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교육	6	4	4
	2	7	8		9		10		11		12	동아리 봉사활동	13	5	9
3	3	14	15	학부모상담 주간 (3.15~3.2 6)	16		17		18		19	동아리 활동	20	5	14
	4	21	22	-,	23		24		25	1학년 안전체험	26	학생회장 선거	27	5	19
	5	28	29		30		31				X			3	22
	5			><					1		2	동아리 활동	3	2	24
	6	4	5		6	영어듣기 평가 1	7		8	영어듣기 평가 2	9	영어듣기 평가 3 봉사활동	10	5	29
4	7	11	12		13		14		15		16	과학의 달 행	17	5	34
	8	18	19		20		21		22		23	동아리 활동	24	5	39
	9	25	26		27	1차고사	28	1차고사	29		30	정보교육	1	5	44
	9	2	3		4		5	어린이날	6	춘계체육 한마당	7	현장체험 학습	8	4	48
	10	9	10		11		12	학생뇨검사	13		14	봉사활동	15	5	53
5	11	16	17		18		19	석가탄신일	20		21	동아리 활동	22	4	57
	12	23	24		25		26		27		28	동아리 활동	29	5	62
	13	30	31											1	63
	14				1	학부모 공개수업	2		3		4	학급의 날	5	4	67
	15	6	7		8		9		10		11	보건교육	12	5	72
6	16	13	14		15		16		17		18	동아리 활동	19	5	77
	17	20	21		22		23		24		25	동아리 활동	26	5	82
	18	27	28		29		30	2차고사						3	85
	18			$\geq <$					1	2차고사	2	2차고사	3	2	87
	19	4	5		6		7		8		9	동아리 활동	10	5	92
7	20	11	12		13		14	장기자랑 한마당	15	여름방학식	16		17	4	96
	21	18	19		20		21		22		23		24	0	96
	22	25	26		27		28		29		30		31	0	96
						여름방학 :	2021	.7.16.(금)~8.15.(气	일) (3	0일)					
1	학기 요 출석일	2일별 수		19		20		18		20	19				96
213		요일별		19		20		18		20		19			96

							Sch	ool Calender							
월	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수	
8		1	2		3		4		5		6		7	0	0
	1	8	9		10		11		12		13		14	0	0
	2	15	16	개학	17		18		19		20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교육	21	5	5
	3	22	23		24		25		26		27	동아리 봉사활동	28	5	10
	4	29	30	학부모상담 주간(8.30~ 9.10)	31									2	12
	4						1		2		3	동아리 활동	4	3	15
	5	5	6		7	영어듣기 평가 1	8	영어듣기 평가 2	9	영어듣기 평가 3	10	정보교육	11	5	20
9	6	12	13		14		15		16		17	봉사활동	18	5	25
	7	19	20	추석연휴	21	추석	22	추석연휴	23		24	동아리 활동	25	2	27
	8	26	27		28		29		30					4	31
	8							>>< C			1	봉사활동	2	1	32
	9	3	4		5		6		7	1차고사	8	1차고사	9	5	37
10	10	10	11		12		13	테마식현장 체험학습	14	테마식현장 체험학습	15	테마식현장 체험학습	16	5	42
	11	17	18		19		20	개교기념일	21		22	영어로 놀자	23	4	46
	12	24	25		26		27		28		29	동아리 활동	30	5	51
	13	31	1		2		3		4		5	독후감 발표회	6	5	56
	14	7	8		9		10		11		12	동아리 활동	13	5	61
11	15	14	15		16		17		18		19	동아리 활동	20	5	66
	16	21	22		23		24		25		26	동아리 활동	27	5	71
	17	28	29		30									2	73
	17						1		2	2차고사	3	2차고사	4	3	76
	18	5	6	2차고사	7		8		9		10	동아리 활동	11	5	81
12	19	12	13		14		15		16		17	동아리 활동	18	5	86
	20	19	20	25	21	예능발표회	22		23	겨울방학식	24		25	4	90
	21	26	27		28		29		30		31			0	90
	22				1	설날	2	설날연휴	3		4		5	0	90
		6	7	개학	8	V	9	~	10	~	11	졸업식 및 종업식	12	5	95
2		13	14		15		16		17		18		19	0	95
		20	21		22		23		24		25		26	0	95
		27	28												
				겨울방학:	2021.	12.24.(금~2.6.([°]	일) (45	일) 학년말 방학	‡: 202	2.2.12.(토)~3.1.(월) (18	8일)			
	2학기 요일별 출석일수			19 19				18 20			19				95
21학년도 요일별 총 출석일수				38		39		36		40		38			191

효도 · 방문 체험학습 안내

1 효도· 방문 체험학습

- 가.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u>연 15일</u>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단 연속은 10일이내) **감염병 위기** 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연 30일 이내) 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나.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절차
-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u>교외체험학습 신청서(</u>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 [서식 9]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공교육 정상화법 선행학습 규제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됩니다.

2. 사고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됩니다.

3.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 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